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산림관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초
3000	경제개발비	62,419,563	64,190,846	△1,771,283	[국 △2,444,657 [기 0	도 651,240 분 21,901	지 0 교 0	균 233 0	233]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62,419,563	64,190,846	△1,771,283	[국 △2,444,657 [기 0	도 651,240 분 21,901	지 0 교 0	균 233 0	233]
3310	산림자원개발	62,419,563	64,190,846	△1,771,283	[국 △2,444,657 [기 0	도 651,240 분 21,901	지 0 교 0	균 233 0	233]
3311	산림관리	50,811,277	53,336,202	△2,524,925	[국 △2,333,614 [기 0	도 △213,725 분 21,901	지 0 교 0	균 513 0	513]
100	경상예산	87,199	72,199	15,000					
120	경상적경비	87,199	72,199	15,000					
	202 여비	47,400	32,400	15,000					
		47,400	32,400	15,000	01 국내여비 ○산림사업 업무추진 부족분			=	15,000
200	사업예산	50,724,078	53,264,003	△2,539,925	[국 △2,333,614 [기 0	도 △228,725 분 21,901	지 0 교 0	균 513 0	513]
210	보조사업	45,983,565	48,786,178	△2,802,613	[국 △2,333,614 [기 0	도 △469,512 분 0	지 0 교 0	균 513 0	513]
	201 일반운영비	9,000	8,500	500	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9,000	8,500	500	01 일반운영비 ○임도타당성 평가위원 수당 (도1,000,000원 + 균4,000,000원) - 4,500,000원 = 500 (도) 100 (균) 400
	206 재료비	126,195	134,747	△8,552	○산림병해충 약제대 126,195,000원 - 134,747,000원 = △8,552 (국) △8,552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,857,894	2,717,132	140,762	
		2,857,894	2,717,132	140,762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산림종합계획 작성 = △37,500 (국) △25,000 (도) △12,500 ○영림계획 작성 (국122,268,000원 + 도61,134,000원) - 78,975,000원 = 104,427 (국) 69,618 (도) 34,809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산림병해충 방제 (국568,193,000원 + 170,281,000원) - 659,439,000원 = 79,035 (국) 81,191 (도) △2,156 ○임산물표준규격 출하지원 (국236,000,000원 + 도70,800,000원) - 312,000,000원 = △5,200 (국) △4,000 (도) △1,2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280,398	1,906,840	373,558	
		2,273,558	1,900,000	373,558	01 시설비 ○조림용 묘목 양묘 2,273,558,000원 - 1,900,000,000원 = 373,558 (국) 373,558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40,685,078	43,991,959	△3,306,881	
		40,685,078	43,991,959	△3,306,881	01 자치단체자본보조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조림사업 (국4,466,638,000원 + 도1,211,200,000원) - 5,495,305,000원 = 182,533 (국) △118,418 (도) 300,951
					○사방사업 (국3,604,300,000원 + 도1,081,290,000원) - 4,696,602,000원 = △11,012 (국) △8,470 (도) △2,542
					○산불방지 (국259,696,000원 + 도138,020,000원) - 279,735,000원 = 117,981 (국) 95,146 (도) 22,835
					○묘목생산기반조성 (도20,381,000원 + 균79,113,000원) - 99,357,000원 = 137 (도) 24 (균) 113
					○숲가꾸기 사업 (국9,540,868,000원 + 도2,027,057,000원) - 13,222,611,000원 = △1,654,686 (국) △1,293,194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361,492
					○도시숲 조성 △537
					· 가로수 조성 (도72,000,000원 + 국62,000,000원) - 134,537,000원 = △537
					○산림복합경영 (국65,400,000원 + 도32,700,000원) - 196,200,000원 = △98,100
					(국) △65,400
					(도) △32,700
					○표고재배시설 (국540,900,000원 + 도162,270,000원) - 1,801,800,000원 = △1,098,630
					(국) △845,100
					(도) △253,530
					○표고재배단지 (국205,000,000원 + 도61,500,000원) - 533,520,000원 = △267,020
					(국) △205,400
					(도) △61,620
					○표고톱밥재배센터 (국100,000,000원 + 도30,000,000원) - 260,000,000원 = △130,000
					(국) △100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30,000
					○밤작업로 시설
					(국120,000,000원 + 도36,000,000원) - 136,500,000원
					= 19,500
					(국) 15,000
					(도) 4,500
					○밤 토양개량
					(국270,720,000원 + 도20,304,000원) - 421,985,000원
					= △130,961
					(국) △121,824
					(도) △9,137
					○밤노령목 관리
					(국161,641,000원 + 도48,492,000원) - 398,066,000원
					= △187,933
					(국) △144,563
					(도) △43,370
					○친환경밤생산 지원
					(국40,000,000원 + 도20,000,000원) - 90,000,000원
					= △30,000
					(국) △20,000
					(도) △10,000
					○밤박피 가공지원
					(국570,000,000원 + 도285,000,000원) - 840,000,000원
					= 15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10,000
					(도) 5,000
					○호두생산 지원
					(국7,800,000원 + 도2,340,000원) - 8,320,000원 = 1,820
					(국) 1,400
					(도) 420
					○밤 생산장비 지원
					(국47,600,000원 + 도14,280,000원) - 98,800,000원
					= △36,920
					(국) △28,400
					(도) △8,520
					○임산물생산 단지조성
					(국75,000,000원 + 도11,250,000원) - 86,480,000원
					= △230
					(국) △200
					(도) △30
					○임산물저장시설
					(국582,300,000원 + 도291,150,000원) - 2,173,680,000원
					= △1,300,230
					(국) △866,820
					(도) △433,410
					○포장디자인 개선
					= △6,630
					(국) △5,100
					(도) △1,53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임산물가공장비지원 (국7,000,000원 + 도3,500,000원) - 21,000,000원 = △10,500 (국) △7,000 (도) △3,500
					○관상수 토양개량 (국19,000,000원 + 도1,425,000원) - 45,641,000원 = △25,216 (국) △23,456 (도) △1,760
					○도시녹지관리단 12,000,000원 x 4명 x 65% = 31,200 (국) 24,000 (도) 7,200
					○묘포지 토양개량 9,500,000원 x 1개소 x 90% = 8,550 (국) 7,600 (도) 950
					○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 △50,544 (국) △23,328 (도) △27,216
					· GPS 측량장비 (국42,000,000원 + 도49,000,000원) - 85,800,000원 = 5,200 (국) 2,400 (도) 2,8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플로터 (국12,672,000원 + 도14,784,000원) - 83,200,000원 = △55,744 (국) △25,728 (도) △30,016 ○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1,355,547 (국) 903,698 (도) 451,849 · 산사태(9.22ha) = 649,144 (국) 432,763 (도) 216,381 · 야계사방(3.75km) = 629,070 (국) 419,380 (도) 209,690 · 임도(0.8km) = 77,333 (국) 51,555 (도) 25,778
	405 자산취득비	20,000	22,000	△2,000	
		20,000	22,000	△2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(GPS측량장비) (국6,000,000원 + 도14,000,000원) - 22,000,000원 = △2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산림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△600
					(도) △1,400
220	자체사업	4,740,513	4,477,825	262,688	[국 0 도 240,787 지 0 균 0] [기 0 분 21,901 교 0]
	308 자치단체등 이전	516,513	413,825	102,688	
		516,513	413,825	102,688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푸른숲선도원 육성 26,000원 x 640명 x 30% = 4,992 ○보호수외과 수술 5,775,000원 x 10본 x 30% = 17,325 ○국토공원화.산불예방 우수기관 시상 60,000,000원 - 30,000,000원 = 30,000 ○보호수 정비(지방이양) (도75,955,000원 + 분108,526,000원) - 147,250,000원 = 37,231 (도) 15,330 (분) 21,901 ○4월 재해피해복구(표고버섯 등) = 13,14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,680,000	2,520,000	160,00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2,680,000	2,520,000	16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명산등산로 정비 120,000,000원 - 60,000,000원 = 60,000 ○장고도 해안침식 방지사업 = 100,000
3312	산림환경연구	4,831,469	4,416,867	414,602	[국 23,060 도 391,542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100	경상예산	3,127,275	2,986,006	141,269	[국 18,365 도 122,904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110	인건비	2,588,399	2,469,695	118,704	[국 18,365 도 100,339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101 인건비	2,588,399	2,469,695	118,704	
		1,009,275	969,275	40,000	01 기본급 ○기본급 부족분 = 40,000
		87,741	83,012	4,729	05 명절휴가비 ○명절휴가비 부족분 = 4,729
		383,093	309,118	73,975	10 일시사역인부임 ○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보조원 = 74,193 (국) 51,935 (도) 22,258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도지정 산림사업용 수요생산(종자채취) (26,280원 x 15명 x 55일) - 55,000,000 = △33,319 (국) △43,220 (도) 9,901 ○속효성 항공방제(참나무 재주나방등) 310ha x 1,858원 = 576 (국) 255 (도) 321 ○채종림 관리 12ha x 520,750원 = 6,249 (국) 3,395 (도) 2,854 ○수목원 코디네이터 = 4,276 ○도시녹지관리단(숲가꾸기.녹지관리) = 12,000 (국) 6,000 (도) 6,000 ○가을꽃행사관련(육묘식재 관리 등) = 10,000
120					
경상적경비		538,876	516,311	22,565	
	202				
	여비	65,000	45,000	20,000	
		59,000	39,000	20,000	01 국내여비
					○산림환경 업무추진 부족분 = 20,000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1 일반보상금	19,704	17,139	2,565	
		5,304	2,739	2,565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급여 1,040,000원 - 520,000원 = 520 ○중식비 2,110,000원 - 1,055,000원 = 1,055 ○교통비 1,680,000원 - 840,000원 = 840 ○피복비 300,000원 - 150,000원 = 150
200 사업예산		1,704,194	1,430,861	273,333	[국 4,695 도 268,638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210 보조사업		966,133	957,100	9,033	[국 4,695 도 4,338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202 여비	11,800	13,800	△2,000	
		11,800	13,800	△2,000	01 국내여비 ○도지정 산림사업용 수요생산(종자채취) 3,000,000원 - 5,000,000원 = △2,000 (국) △3,370 (도) 1,370
	206 재료비	55,676	51,520	4,156	○도지정 산림사업용 수요생산(종자채취) 196,200원 x 5종 = 98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533 (도) 448
					○도지정 산림사업용 수요생산(포플러 묘목대) (25,000본 x 927원) - 20,000,000원 = 3,175 (국) 3,175
	401 시설비및부 대비	835,472	833,860	1,612	
		827,230	825,618	1,612	01 시설비 ○숲가꾸기 사업 (1,373,600원 x 20ha) - 25,860,000원 = 1,612 (국) 806 (도) 806
	405 자산취득비	52,685	47,420	5,265	
		52,685	47,420	5,265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산림생태계 환경오염도 조사장비(디지털카메라 등4종) 16,780,000원 - 6,920,000원 = 9,860 (국) 4,930 (도) 4,930 ○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(GPS)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2)산림환경연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20,000,000원 - 22,000,000) = △2,000 (국) △600 (도) △1,400 ○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(플로터) = △2,595 (국) △779 (도) △1,816
220	자체사업	738,061	473,761	264,300	
	201 일반운영비	68,373	53,573	14,800	
		38,373	33,573	4,800	01 일반운영비 ○간이이동식 공중화장실 개보수 1,600,000원 x 3개소 = 4,800
		30,000	20,000	10,000	02 행사운영비 ○자연학습체험 및 이벤트 행사(가을꽃축제) 30,000,000원 - 20,000,000원 = 10,000
	206 재료비	87,620	77,620	10,000	○가을꽃 행사관련 식물등 재료구입 = 10,000
	207 연구개발비	67,000	17,000	50,000	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50,000	0	50,000	01 용역비 ○금강자연휴양림 중.장기발전방안연구 = 5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444,500	283,000	161,500	
		444,500	283,000	161,500	01 시설비 ○당직실 환경개선사업 = 20,000 ○직원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사업 500,000원 x 40평 = 20,000 ○특고압 MOF교체 = 2,500 ○박물관 방염공사 보완 = 14,000 ○휴양시설환경개선사업 = 20,000 ○천적연구실옥상 방수공사 등 = 20,000 ○노후 전기시설 교체 = 20,000 ○노후 배관 부식방지시설 설치 = 45,000
	405 자산취득비	70,568	42,568	28,000	
		70,568	42,568	28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직원체력단련실 헬스용품구입 = 10,000 ○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 = 18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3)휴양림관리

세세항:(110)인건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13	휴양림관리	6,776,817	6,437,777	339,040	[국 △134,103 도 473,423 지 0 균 △280] [기 0 분 0 교 0]
100	경상예산	2,101,299	2,009,813	91,486	[국 6,000 도 85,486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110	인건비	1,661,147	1,576,661	84,486	[국 6,000 도 78,486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101 인건비	1,661,147	1,576,661	84,486	
		325,141	240,655	84,486	10 일시사역인부임 ○휴양림관리인부임 90,180,000원 - 21,970,000원 = 68,210 ○도시녹지관리단 운영 4,000,000원 x 3명 = 12,000 (국) 6,000 (도) 6,000 ○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= 4,276
120	경상적경비	440,152	433,152	7,000	
	202 여비	43,680	36,680	7,000	
		34,500	27,500	7,000	01 국내여비 ○휴양림관련 업무추진 부족분 = 7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3)휴양림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	사업예산	4,675,518	4,427,964	247,554	[국 △140,103 도 387,937 지 0 균 △280] [기 0 분 0 교 0]
210	보조사업	1,966,365	2,057,811	△91,446	[국 △140,103 도 48,937 지 0 균 △280] [기 0 분 0 교 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886,710	1,975,811	△89,101	
		1,820,758	1,908,268	△87,510	01 시설비 ○임도시설사업 (79,130,000원 + 316,520,000원) - 396,000,000원 = △350 (도) △70 (균) △280 ○조림사업 (10,757,000원 + 19,274,000원) - 83,917,000원 = △53,886 (국) △40,702 (도) △13,184 ○사방사업 = △157,510 (국) △110,257 (도) △47,253 ○숲가꾸기사업 (319,078,000원 + 319,077,000원) - 597,875,000원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= 40,280 (국) 20,140 (도) 20,140
					○산림병해충방제사업 (42,884,000원 + 45,638,000원) - 104,566,000원 = △16,044 (국) △7,917 (도) △8,127
					○휴양림보완사업 492,000,000원 - 392,000,000원 = 100,000
		23,778	25,369	△1,591	03 시설부대비 ○시설부대비 = △1,591 (국) △1,114 (도) △477
	405 자산취득비	57,655	60,000	△2,345	
		57,655	60,000	△2,345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(GPS) (6,000,000원 + 14,000,000원) - 22,000,000원 = △2,000 (국) △600 (도) △1,400 ○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(플로터) (1,622,000원 + 3,783,000원) - 8,000,000원 = △2,595 (국) △778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1,817 ○동력천공기 750,000원 x 3대 = 2,250 (국) 1,125 (도) 1,125
	220 자체사업	2,709,153	2,370,153	339,0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603,050	2,268,050	335,000	
		2,599,750	2,264,750	335,000	01 시설비 ○휴양림임시주차장시설공사 = 250,000 ○화장실매입및에너지절전사업 = 70,000 ○보령지소화장실보수사업 = 15,000
	405 자산취득비	66,103	62,103	4,000	
		66,103	62,103	4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행정장비구입(전자복사기 등) = 4,000
세 출 합 계		62,419,563	64,190,846	△1,771,283	